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학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교진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 및 관리·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학술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21724호, 2026.6.2. 공포, 12.3. 시행)되고, 개정된 법률에서 학술지원성과의 유·무형 종류, 학술지원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, 관리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회적 환류 및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학술지원성과의 유형·무형의 종류를 정함(안 제2조의2 신설)

- 1) 「학술진흥법」 개정(2026.6.2., 12.3.시행)으로, ‘학술지원성과’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, 유형·무형의 성과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유형·무형의 성과의 종류를 논문, 저서 및 역서,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 9개 성과로 분류함

※ 1.논문, 2.저서 및 역서, 3.특허 등 지식재산권, 4.연구활동 과정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(DB), 5.소프트웨어, 6.영상·음원·이미지 등 디지털 학술자원, 7.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,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, 8.연구활동 과정에서 수집·생산된 자료, 9.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·무형의 성과

나. 학술지원성과의 대학등의 공동 소유 및 국가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(안 제18조제1항~4항)

1) 「학술진흥법」 개정(2026.6.2., 12.3.시행)으로, 학술지원성과를 유형 및 참여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학등이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, 대학등의 공동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함

- 여러 대학등이 각자 성과를 창출한 경우: 창출한 대학등이 성과를 소유
-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: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되, 대학등 간의 협의에 따른 비율도 인정
- 연구용역을 위탁 받은 대학등이 학술지원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용역을 맡긴 대학등이 소유

2) 학술지원성과가 국가안보, 공공 이익목적 활용, 해당 대학등의 국외 소재,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로 하고자 할 경우 등에 세부 기준을 정함

다. 학술지원성과의 관리·절차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(안 제18조의2 신설)

- 1) 학술지원성과를 관리하는 대학등의 장에게 학술지원성과의 목록, 소유현황 및 활용실적을 기록·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
- 2) 학술지원성과를 해당 전문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6. 7. 22. ~ 8. 31.)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 해당없음

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학술지원성과의 유형)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“논문,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·무형의 성과”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.

1. 논문
2. 저서 및 역서
3. 특허 등 지식재산권
4. 연구활동 과정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(DB)
5. 소프트웨어
6. 영상·음원·이미지 등 디지털 학술자원
7.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,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
8. 연구활동 과정에서 수집·생산된 자료
9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·무형의 성과

제18조의 제목 “(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)”을 “(학술지원성과의 소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

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학술지원성과를 소유하는 경우 그 학술지원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러 대학등이 각자 학술지원성과를 창출한 경우: 학술지원성과를 창출한 대학등이 해당 성과를 소유한다.
2. 여러 대학 등이 공동으로 학술지원성과를 창출한 경우: 학술지원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, 대학등 간의 협의에 따라 성과의 소유비율 및 학술지원성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.
3. 연구 용역을 위탁 받은 대학등이 학술지원성과를 창출한 경우: 용역을 맡긴 대학등이 소유한다.

② 교육부 장관은 대학등이 협약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·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술지원성과를 국내 소재 대학등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학술지원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

④ 법 제16조의2제3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제3항에 따라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

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.

⑤ 대학등의 장은 학술지원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학술지원과제의 명칭
2. 학술지원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
학술지원과제 번호
3. 학술지원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학술지원성과의 관리) ① 대학등의 장은 학술지원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술지원성과의 목록, 소유현황 및 활용 실적을 기록·관리할 수 있다.

② 대학등의 장 또는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학술지원성과를 해당 전문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학술지원성과를 소유한 대학등의 장은 학술지원성과의 유지·관리·공동활용, 관련 정보 공개 등 학술지원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④ 학술지원성과를 소유한 대학등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학술지원성과의 유형)</u> <u>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“논문,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·무형의 성과”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.</u> <u>1. 논문</u> <u>2. 저서 및 역서</u> <u>3. 특허 등 지식재산권</u> <u>4. 연구활동 과정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(DB)</u> <u>5. 소프트웨어</u> <u>6. 영상·음원·이미지 등 디지털 학술자원</u> <u>7.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,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</u> <u>8. 연구활동 과정에서 수집·생산된 자료</u> <u>9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·무형의 성과</u>
<u>제18조(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)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 결과에</u>	<u>제18조(학술지원성과의 소유)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학술지원성</u>

대한 지식재산권이 다른 법령의
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
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급
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구 결과에
대한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
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
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데
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
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과를 소유하는 경우 그 학술지
원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러 대학등이 각자 학술지
원성과를 창출한 경우: 학술지
원성과를 창출한 대학등이 해
당 성과를 소유한다.

2. 여러 대학 등이 공동으로 학
술지원성과를 창출한 경우: 학
술지원성과를 창출한 기여도
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
되, 대학등 간의 협의에 따라
성과의 소유비율 및 학술지원
성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
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
른다.

3. 연구 용역을 위탁 받은 대학
등이 학술지원성과를 창출한
경우: 용역을 맡긴 대학등이
소유한다.

② 교육부 장관은 대학등이 협
약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·
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
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술지원
성과를 국내 소재 대학등의 소
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

<신 설>

적으로 학술지원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

<신 설>

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 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

<신 설>

④ 법 제16조의2제3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제3항에 따라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.

<신 설>

⑤ 대학등의 장은 학술지원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학술지원과제의 명칭

2. 학술지원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학술지원과제 번호

3. 학술지원과제를 지원한 중앙 행정기관

제18조의2(학술지원성과의 관리)

① 대학등의 장은 학술지원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술지원성과의 목록, 소유현황 및 활용 실적을 기록·관리할 수 있다.

② 대학등의 장 또는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학술지원성과를 해당 전문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학술지원성과를 소유한 대학등의 장은 학술지원성과의 유지·관리·공동활용, 관련 정보 공개 등 학술지원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④ 학술지원성과를 소유한 대학등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871